

의안번호	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4.6.25.
추 계 번호	24B0702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(요양급여)	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4항) 4. 예방 및 재활치료	의무규정
2	안 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	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(이하 “해외파견자”라 한다)은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(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)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의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,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3항) 1. 제121조에 따른 보험사업에 가입한 경우 2. 파견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	의무규정
		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. 이 경우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함(제4항)	의무규정
		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, 법 적용 제외·재적용의 신청 및 승인,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(제7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0조(요양급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2	안 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‘예방’을 추가하고,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“산재보험”)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 - (안 제40조)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·치료·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‘예방’을 추가하는 내용임
 - －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찰 및 검사,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(義肢)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, 처치·수술 그 밖의 치료, 재활치료, 입원, 간호 및 간병, 이송 등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나, 개정안의 시행으로 예방이 추가될 경우 요양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그러나 현시점에서 예방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, 지급내용, 지급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요양급여 지급액이나 사업대상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음

- 참고로 정부의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출연 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, 현행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은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각 회계연도마다 산재보험기금 지출예산 ‘총액의 3% 범위’에서 출연금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, 지출예산 ‘총액의 8% 이상’을 산재예방사업을 위해 편성하여야 함¹⁾

[표 1] 산재예방 관련 재정지원 현황: 2019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산재예방사업	5,050	6,477	11,092	12,372	13,094	14,586

주: 2019~2023년은 결산 기준이고 2024년 계획액 기준임

자료: 고용노동부

- (안 제122조) 현행법상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(당연 및 임의가입자)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(이하 “해외파견자”)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²⁾
 - 해외파견자란,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(일부 지급 포함) 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을 의미함

1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95조(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제96조(기금의 용도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.

2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(이하 “해외파견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(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)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[표 2]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적용 현황

(단위: 명, 백만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산재보험 적용 해외파견자 수	15,539	14,497	14,138	14,269	14,286
산업재해 승인자 수	33	21	30	29	22
산재보험급여 지급자수(A)	131	120	140	145	127
산재보험급여 집행액(B)	3,520	4,584	4,683	5,181	4,142
1인당 급여액(B/A)	27	38	33	36	33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은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 - － 첫째,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(당연 및 임의가입자)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함
 - － 둘째, 개정안은 파견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³⁾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적용제외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3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

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,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121조에 따른 보험사업에 가입한 경우
2. 파견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Ⅲ. 부대의견

- 개정안은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, 추가재정소요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